

전 주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20드단 이혼
원 고 ()
주소 전북 ()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(만성동)
(송달영수인 **전종필**)
등록기준지 전북 ()
피 고 ()
국적 ()
주소 ()
사 건 본 인 ()
주소 전북 ()
등록기준지 전북 ()
변 론 종 결 2020.
판 결 선 고 2020.

주 문

1.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
2.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